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670호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 외 3필지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9일

금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1.4.29.~2021.5.13.(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11층 주택과 (☎02-2627-1615)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6941-0012)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 :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구역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9-1 외 3필지
(28,336㎡)

다. 사업시행자 :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김원철)

라. 건축계획 : 지하4층 지상35층, 연면적 150,174.9948㎡
건폐율 28.27%, 용적률 299.99%

마.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5.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공람의견서 직접 제출

의 건 서			
사 업 명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9-1 외 3필지		
사업시행자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의견제출자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
	주 소		
의견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69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공직윤리 강화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용어 변경 등(안 제2조제1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민원 감사담당관, ☎ 02-2627-1185, FAX 02-2251-1685, E-mail : ksahh90@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